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 보조금 등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투자유치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 나.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보조금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기반시설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9조)
- 라. 중복지원의 제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2조)
- 마.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9조)
- 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사.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조성·용도·관리·운영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제28조)
- 아. 보조금 지원·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함(안 제29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10월 중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시 관할구역 안에 신설·증설하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유치사업구역”이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기록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록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8. “투자비”란 토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기업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5. 투자유치사업구역 내 입주기업

6. 그 밖에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업

제2장 투자기업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파주시 관할구역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2.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업 중 투자 규모, 산업 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게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등)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대부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원 처리의 특례)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을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결정된 기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 지원금의 사용 여부 및 지원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투자협약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13조(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투자유치 업무 총괄 실·국장 1명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도시계획, 예산 등 관련 부서장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기업지원, 금융, 법률,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유관기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민관협력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력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파주시 투자유치기금

제21조(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출자금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과 제2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파주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

서장 1명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14조제4항의 자격 요건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기금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 위원”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2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시의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시의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준용)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940-9723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조 우 현
	투자유치팀장	이 건 석
	담 당 자	김 강 민

□ 관계법령발췌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⑩ (생략)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생략)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나. 비용 발생 요인

-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투자유치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일반회계 지출로 중복 산정하지 않음
- 기금 조성액은 투자유치 관련 용역에서 제시한 파주형 기금 및 펀드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투자유치위원회 수당은 지급 대상 위원 9명, 반기별 개최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총 소요액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10,018,000
투자유치활성화	기금 전출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위원회 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부터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투자유치팀장 이건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10,018,000
기금 전출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위원회 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재원 조달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10,018,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10,018,000
	지방세수입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2,003,600	10,018,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2013.02.22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6.12.16 조례 제1311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국내자금이 투입된 사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제1호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임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나 분야별 관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③ 자문료 및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추진협의회 운영)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를 「과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6.12.16.)

1.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2.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 「과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4조(기반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협약에 따라 정한다.

1. 진입도로
2. 상·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투자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재정적 지원은 맨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적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해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하자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에 이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

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협약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해지 또는 파기되는 경우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7)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0) 과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6.12.16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5> 생략

<7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81> 생략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9			
정 책 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김강민	전화번호	031-940-5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 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40		
자치법규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주 관부서 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강민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9. 16.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제영향분석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이건설 담당자 김강민
3. 관련법령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4. 주요골자	○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보조금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6조) ○ 기반시설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및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 중복지원 제한 사후관리 및 자원의 취소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파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9조)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파주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구성·용도·관리·운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8조) ○ 보조금 지원·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9조)	
5. 심사의견	○ <u>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u>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투자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여 전략산업 및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